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63
----------	-------

발의연월일 : 2025. 6. 30.

발 의 자 : 이해민 · 복기왕 · 손명수
김준형 · 황운하 · 김우영
이학영 · 최민희 · 최혁진
서왕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과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대되면서, 기업에 대한 사이버 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 역시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SKT의 사이버침해 사고 및 유심정보유출 사건으로 국내 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하고 정보보호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을 지키며 추가적인 정보보호 투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유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보호 관련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고, 관련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비용, 정보보호 컨설팅 비용 및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신규채용 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여 정보보호와 관련된 투자 및 인력 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5)(중전의 4)) 중 “3”을 “4”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로 한다.

- 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0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15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04조의36(정보보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는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보호대책 수립, 위험요인평가, 모의해킹,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수행하는 업무용역을 이용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지출한 비용
2. 기업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보험료 납부액의 합계액.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에 따라 가입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호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7(정보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정보보호 전문인력 고용 인원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6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일 것

2. 정보보호 전담인력으로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

일까지의 기간 중 정보보호 전문인력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와 제29조의8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보호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보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
례) 제104조의3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보호 전문인력
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1) ~ 3) (생략)

<신 설>

2. -----

가. -----

-

1) ~ 3) (현행과 같음)

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

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

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설비(이하 이 조에

서 “정보보호 시스템설

비”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

00분의 25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

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

4) 1)부터 3)까지 외의 자
산에 투자 하는 경우
나. (생 략)

3.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
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
장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
구개발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 설>

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지의 경우: 100분의
20

다) 가) 및 나) 외의 경
우: 100분의 15

5) -----4-----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

개발시설 및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

-----.

제104조의36(정보보호비용에 대

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큰 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 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는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보호대책 수립, 위험요인평가, 모의해킹,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수행하는 업무용역을 이용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기

<신 설>

관에 지출한 비용

2. 기업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보험료 납부액의 합계액.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에 따라 가입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호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7(정보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정보보호 전문인력 고용 인원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6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일 것
2. 정보보호 전담인력으로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보보호 전문인력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와 제29조의8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